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

2018.03.27.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
회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
3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회사와
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(2018.03.27.~2018.04.03.)내에 우리 회사에 아
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:

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

◎ 대표자 : 건설노조 위원장 장 옥 기,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정 민 호

◎ 교섭요구일자 : 2018.03.27.

◎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: 2018.03.27.~2018.04.03.

◎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

※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.

※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.

※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.

2018. 03. 27.

사 업 체 명 :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안평로 75

신우개발주식회사

대 표 자 명 : 대표이사 김 (직인) 환

